

#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

황윤상 / 세무사 · 황윤상세무회계 사무소 소장

## 1. 연말정산이란

소득세는 1과세기간(통상1.1~12.31)에 얻은 소득에 대해 거주자가 스스로 다음해 5월중에 납부하는 국세이다.

이에 대한 예외조치로 납세의무자에게 소득금액들을 지급하는 제3자가 소득금액등을 지급할 때 그 납세의무자의 세액을 징수하여 과세관청에 납부하는 원천징수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.

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은 매월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연도 1월분의 급여를 지급할 때 소득자별로 1년간의 총급여액에 대하여 소득공제, 세액공제 등을 정확히 반영하여 실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계산한 후 매월 근로소득간이 세액표에 의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을 비교하여 추가납부하거나 환급받고 사업소득등 다른소득이 없는 근로자는 별도의 신고절차없이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제도이다.



## 2. 연말정산의무자

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모든 개인, 법인(국가, 지방자치단체 등 포함)은 연말정산의무가 있으며, 연말정산의무자는 근로자 개인별로 연간 지급한 총 급여 지급액 · 비과세소득을 확정하고 근로자가 제출하는 소득공제신고서 및 각종

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세법상 각종 소득공제액 및 세액공제액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등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하여야 한다.

- 근무지가 둘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무지신고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가 '종된 근무지'의 근로소득까지 합산하여 정산하여야 한다.

이 경우 종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는 종된 근무지에서 지급하는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며 근로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아 다

음연도 1월분의 급여를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※ 주된 근무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종된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각각 연말정산을 하고 근로자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다시 해야 한다.

- 연도중에 근무지를 옮긴 경우에는 현재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여야 한다.

- 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원천징수의무자 이외의 자로부터 지급받는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환급금과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받는 육아휴직급여·산전후휴가급여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연말정산하여야 한다.

3. 연말정산의 과세체계

급여액

(-)비과세소득

\*생산직근로자의 시간외 근무수당 (연 240만원 한도)

\*현물식대 또는 월5만원 이하 식사대 등

총급여액

(-)근로소득공제

\*연500만원까지 : 전액공제

\*500만원초과 1,500만원 이하 : 500만원+500만원 초과분의 45%

\*1,500만원 초과 3,000만원 이하 : 950만원 +1,500만원 초과분의 15%

\*3,000만원 초과 4,500만원 이하 : 1,175만원 +3,000만원 초과분의 10%

\*4,500만원 초과 : 1,325만원+4,500만원 초과분의 5%

근로소득금액

(-) 종합소득공제

1. 인적공제

\*기본공제 : 가족(본인포함, 배우자, 부양가족), 1인당 연100만원씩 공제

\*추가공제 :

• 가족 중 장애자, 경로우대자 등이 있는 경우 사유당 연100만원 씩 추가공제

• 소득자가 부녀자로서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경우, 만6세이하 자녀양육의 경우 사유당 연50만원씩 추가 공제

\*소수공제자 추가공제 : 기본공제 대상자가 1인인 경우 연100만원, 2인인경 우 연50만원 추가공제

2. 연금보험료 공제

\*국민연금, 공무원연금, 군인연금, 사립학교교직원연금, 별정우체국연금의 보험료(본인 기여금) 100%공제



3. 특별공제

1) 보험료 : 건강보험료, 고용보험료-전액공제  
 보장성보험 : 연70만원 공제한도 (예:자동차보험, 화재보험등)

장애인 전용보험료 : 연 100만원 한도

\*일반보장성 보험료 공제와 중복적용 배제(∴ 보험료공제의 최고한도는 170만원까지 가능)

2) 교육비 : 본인, 배우자, 직계비속, 동거입양자 및 형제자매를 위해 지출한 입학금, 수업료, 보육비용, 기타 공납금

① 유치원,보육시설 : 1인당 100만원한도(다만, 영유아보육비, 취직전아동의 학원비, 유치원교육비는 자녀양육비공제와 선택)

② 초,중,고 : 1인당 150만원한도

③ 대학(사이버대학교포함) : 1인당 300만원 한도(근로자 본인은 전액)

④ 대학원 : 전액공제(근로자 본인에 한함)

⑤ 장애인특수교육 : 1인당 150만원 한도

3) 의료비 : 총급여액의 3%초과분 연300만원 한도, 노인의료비·장애인 재활의료비는 재활의료비와 한도초과로 공제받지 못한 의료비중 적은 금액 추가공제

4) 주택자금 : ① 주택저축불입액(또는 상환액)의 40%

② 주택취득·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의 40%

③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전액 공제 한도는 ①②③ 합하여 연 300만원 한도

5) 기부금 : 정치자금 - 전액공제  
 법정기부금 - 전액공제

조세특례제한법상 특정기부금(소득금액의 50%범위내)

지정기부금 - 소득금액의 10%범위 내

6)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소득공제

\*연금저축소득공제 : 연간저축 불입액의 100% (240만원 한도)

- 종전의 개인연금저축 가입자(2000. 12.31 이전가입자)는 별도로 연간 40%공제(72만원한도)

\* 투자조합출자등 소득공제 : 투자금액의 15%(종합소득금액의 50%) 한도

\*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: 총급여액의 10%를 초과금액의 20% 공제(연간500만원 한도)

과세표준

(\* 기본세율(9%~36%, 4단계 초과누진)

산출세액

(-)근로소득세액공제 등 세액공제·세액감면  
 근로소득세액공제  
 산출세액 50만원 이하분 : 45%  
 산출세액 50만원 초과분 : 30%  
 40만원 한도

결정세액

(+)가산세

총결정세액

(-) 기납부세액  
중간에납세액, 원천징수세액, 수시부과세액 등

**납부할세액**

〈일용근로자의 과세체계〉

-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거나, 근로를 제공한 날또는 시간의 근로 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 받는 자를 말한다

일용 총급여액(비과세소득제외)

(-) 근로소득공제(일6만원)

일용근로소득금액

(\*) 세율 10%

산출세액

(-) 근로소득세액공제(산출세액의 45%)

결정세액(원천징수세액)

**4.연말정산시기**

(1) 계속근무자

- 연말정산의무자는 월별납부 및 반기별납부 여부에 불구하고 2003년 1월분 급여 지급 시 2002년도의 연간급여액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한다.
- 1월분 급여를 1월말까지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1월31일까지 연말정산을 하여야 한다.

(2) 중도퇴직자

- 연도중에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달의

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하고 퇴직자에게 근로소득 원천징수 연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

- 퇴직자가 재취업할 경우에는 전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할 수 있도록 전근무지에서 교부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연말정산 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**5. 소득공제 세액공제등의 제출증빙서류**

- 소득공제 신고서 : 모든 근로자 본인이 작성하여 매년 제출하여야 함
- 일시퇴거자 동거가족 상황표 : 배우자와 직계비속이외의 동거가족 중에 취학·질병의 요양·근무상의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자가 있는 근로자로서 본인이 작성
- 주민등록표등본(외국인은 외국인사실증명) : 2002년 신규입사한 근로자, 공제대상가족의 변동이 있는 근로자, 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호적등본을 제출
- 수급자 증명서 :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서 읍·면·동사무서에서 발급
-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(수첩) 사본(상이자는 상이증명서) : 심신상실자와 정신지체자, 상이자와 이의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, 청각장애인과 시각장애인 이외에 항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
-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표등본 : 부녀자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



- 호적등본·주민등록표등본입양증명서 : 동거 입양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는자
- 보험료 납입증명서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(보험증권사본 및 보험료 자동이체 통장사본) : 생명보험, 상해보험, 손해보험, 생명공제 등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를 납입한 근로자
- 보험료 납입영수증(장애인전용보험표시) : 장애인을 대상으로 생명보험, 상해보험, 손해보험, 생명공제등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를 납입한 근로자
- 의료비지급명세서 및 의료비영수증·장애인 보장구 구입영수증 : 총급여액의 3%를 초과 하는 연간 의료비를 지급한 근로자
- 보육비용납입영수증·교육비납입증명서 : 자녀, 배우자, 형제자매(동거입양자)가 유치원·보육시설 및 초·중·고 대학에 재학중인 근로자 근로자 본인이 초·중·고·대학·대학원에 재학중인 자, 취학전아동이 학원 수강을 하는 근로자
-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, 주택자금상환증명서, 장기주택저당차입금, 이자상환증명서 : 주택자금공제를 받을 근로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(주택마련저축통장사본), 장기주택차입금 이자상환액을 최초 공제신청시 - 취득한 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
- 기부금명세서·기부금납입영수증 : 공제대상 기부금을 지출한 근로자
-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(개인연금저축통장사본) : 2000.12.31 이전에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근로자

- 연금저축납입증명서 : 2001.1.1 이후에 연금저축에 가입한 근로자
- 신용카드소득공제신청서·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 :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근로자가 신용카드업자·직불카드취급금융기관·백화점 등에서 확인서 발급받아 공제 신청서를 작성

## 6. 소득공제내용중 유의사항

### 1) 배우자공제

- 12.31. 현재 법률적인 배우자를 말함
- 2002년부터 배우자의 이자·배당·부동산임대소득도 공제대상 기준금액인 대상금액에 포함

### 2) 부양가족공제

- 직계존속에 대한 공제는 원칙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녀가 공제받는 것임.
-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자녀도 직계존속이 주위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제되며, 이는 직계존속이 독립된 생계능력이 없어 당해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를 말함

### 3) 장애인공제

-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서 취학·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자(말기암환자, 만성신부전증환자등)는 의료기관이 발행하는 장애자증명서를 제출하면 장애인공제와 의료비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음

#### 4) 보험료 공제

-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임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.

#### 5) 의료비 공제

- 시력보정용안경 또는 콘택트렌즈비용으로 기본공제대상자 1인당 연50만원까지 의료비에 해당(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이 있어야함) → 의료비공제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한도액 계산 시 의료비지출액에 합산된다는 것임.
- 아버지(사업소득자), 어머니(근로소득자) 인 경우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는 아버지가 받고 교육비, 의료비공제는 어머니가 받을 수 있음

#### 6) 교육비 공제

- 형제자매에 대한 교육비는 생계를 같이 하는 형제자매에 대하여만 공제됨
- 영유아·유치원·취학전아동의 교육비는 자녀 양육비공제와 선택하여 하나만 공제할 수 있음

#### 7) 신용카드에 사용금액 소득공제

- 카드사용자의 범위에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(나이제한 없음)이 포함됨
- 할부사용한 금액도 사용시점의 금액에 해당됨

### 6. 잘못 공제한 사례

- \*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이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가 각각 배우자공제

\* 배우자가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원을 초과하는 자영업자이면서 남편인 근로자가 배우자 공제를 받은 경우

\*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는 부모를 형제들이 각각 부양가족공제

\* 맞벌이 부부가 연말정산시 만20세 이하의 자녀를 각각 부양가족공제 적용

\*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부양가족 명의로 가입한 보험의 보험료를 공제

\*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양가족을 피보험자(수익자)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납입한 보험료를 공제

\* 건강진단, 미용·성형수술비, 건강증진 건강증진 약품구입비를 의료비 공제

\* 실제 부양하지 아니하는 직계존속이나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하는 형제자매의 의료비를 공제

\* 백지영수증을 받아 금액을 임의로 기재하여 실제 지출액을 초과하여 의료비 공제

\* 보충수업비, 학교버스 이용료, 교육자재대, 책값을 공제

\* 직계존속을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를 공제

\* 현금인출분을 신용카드사용금액으로 공제

\* 사업관련 경비로 처리된 종업원명의로 신용카드사용금액을 공제

\* 신용카드사용액에서 제외되는 보험료 납입등에 사용한 신용카드금액을 부당하게 공제

\* 위장가맹점과의 거래분을 신용카드사용금액으로 부당하게 공제

※ 참고사항

맞벌이 부부의 소득공제

▶ 배우자공제

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서로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부양가족에 대하여는 한 소득자만이 공제하여야 함.

▶ 부양가족공제

배우자의 형제자매는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포함

▶ 자녀양육비 공제

자녀양육비공제는 기본공제와 분리하여 배우자가 공제가능

\* 부부가 맞벌이인 경우 남편이 기본공제를 하였더라도 배우자(처)가 자녀양육비공제 가능

\* (반대의 경우) 처가 기본공제를 하는 경우에, 남편이 자녀양육비공제를 하는 것은 불가함

\* 영유아보육비와 자녀양육비 공제는 중복적용이 안되므로 남편은 교육비(영유아보육비) 공제를 받고 배우자는 자녀양육비공제를 받는 것은 불가함

▶ 보험료 공제

근로자 본인과 배우자가 맞벌이부부로서 서로 공제대상 배우자가 아닌 경우

\*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며 피보험자인 경우에는 보장성보험에 대한 보험료에 대하여는 근로자 본인만이 공제를 받을 수 있고

\* 계약자가 근로자 본인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모두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 
자녀에 대하여 남편이 기본공제를 받고 부인이 그 자녀를 피보험자로하여 보험료를 지출한 경우에는 당해 보험료에 대하여 부인이 공제함

▶ 교육비와 의료비 공제

자녀를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와 의료비는 기본공제를 누가 받았는지에 관계없이 남편 또는 배우자 중 한사람이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음  
배우자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와 교육비 중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있으나 교육비는 공제되지 아니함.

맞벌이 부부 이외의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만이 공제가능한 것임.

▶ 주택마련저축

맞벌이 부부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주민등록등본상 각각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일시퇴거에 해당되므로 부부 중 한사람만이 공제받을 수 있음

▶ 신용카드공제

가족카드를 사용한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자 사용금액을 각각 공제받는 것임

문의 : 02)3453-5536